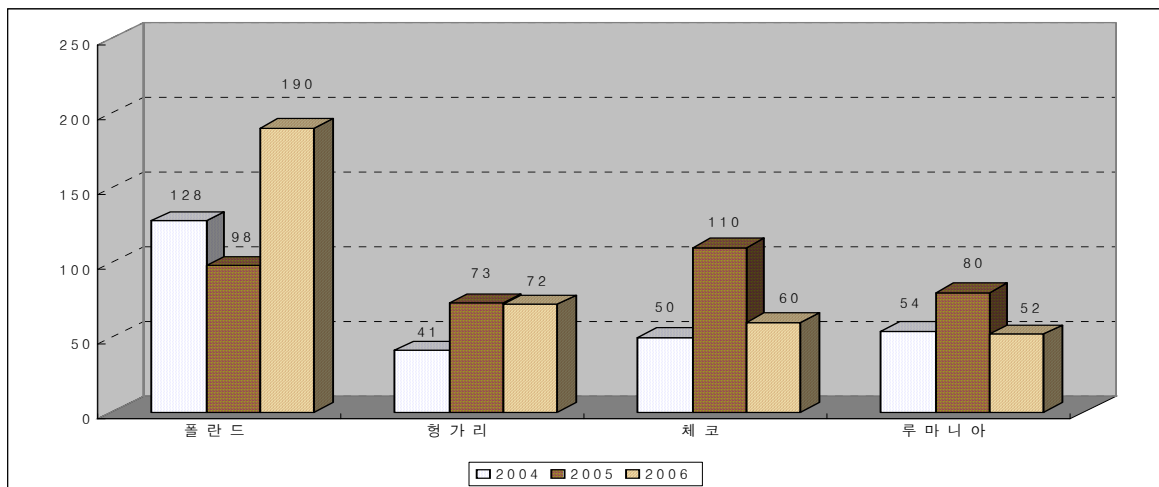


루마니아,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정책

<그림> 동유럽 주요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실적 추이

(단위: 억 달러)



자료: 각국 중앙은행, 재무부, 외국인투자 유치기관 등.

1. 외국인직접투자 현황

- 1992년 1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7,716개에 달하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었음. 2003년에는 최대 은행인 Romanian Commercial Bank(BCR), 2004년에는 최대 정유·가스기업인 SNP Petrom의 외국기업에 대한 매각이 성사되기 시작하여 최근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본격화되고 있음.

○ 2006년 3월 루마니아 최대은행인 BCR의 52% 지분이 22억 달러에 Erste Bank에 매각되었고, 25% 지분은 IFC, EBRD에 추가적으로 10억 달러에 매각됨. 또한, 동년 6월 루마니아 최대 송전기업 Electrica Muntenia Sud의 지분 67.5%(8.2억 유로)가 Enel에 매각됨.

- 2000년대 초반까지 루마니아의 FDI 실적은 중동부 유럽지역 주변국들에 비해

저조한 편이었으나, 2004년에는 민영화 수익증가에 힘입어 GDP의 7.5%에 달하는 FDI가 유입됨.

- 1989-2003년 FDI 유입실적은 105억 달러(1인당 486달러)로 주변국인 헝가리의 336억 달러(1인당 3,364달러), 중동부 유럽국가 및 발틱 3개국의 1인당 2,122달러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저조한 수준임.
- 대규모 민영화 실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투자 및 재투자의 급격한 증가로 2005년에는 80억 달러의 FDI를 유치한 것으로 추정됨. EU 가입(2007.1)을 계기로 사회간접자본, 신규 및 현대화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공공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등 2006년에도 FDI 유입실적이 52억 달러를 기록함.
- 최근 루마니아 정부는 중소기업청(National Agency for SMEs), 협동조합(Co-operatives) 및 사업환경국(Business Environment Directorate)을 합병하여 루마니아 외국인투자청(ARIS)을 설립함.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민영화 산업추진으로 ARIS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.

2. 외국인투자 정책

(1) 정책 개요

- 1990년대 중반의 외채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인프라 구축 및 지속적 경제성장에 대한 실패로 외환위기를 초래함. 따라서 루마니아 정부는 외채를 통한 성장 대신 산업의 전반적 침체, 기술수준의 낙후 등 산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이전,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설정함.
- 루마니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을 타파하고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체계화하였으며 투자절차상의 관료주의를 일소하기 위해 투자 관련 창구를 일원화 하는 등 IT, 제조업, 광업, 농업, 운송업, 발전 등의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음.

- 1997년 루마니아 정부는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간 동등한 대우 보장 등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명령 제92호를 공포함. 동 법규는 나후 지역의 산업화와 원유·가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 의지에 따른 것임.
- 2001년에는 IMF 및 세계은행의 권고로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률 제 332호를 공포함. 동 법규 제정으로 루마니아 투자 관련법은 투자금액에 따라 3개의 분야(중소기업부, 개발진단부 및 외무부 관할)로 구분 적용되어 투자절차 법규 적용이 체계화됨.
- 1990년부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작된 민영화로 6,200개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고, 민영화 기업 지분의 70%는 국가소유기금(State Ownership Fund: SOF)에, 30%는 민간소유기금(Private Ownership Fund)에 할당됨.
 - 1991년 설립되어 국영기업의 지분을 배분하고 관리하던 국가소유기금(State Ownership Fund: SOF)은 2000년 12월 Authority for Privatization and Management of State Ownership(APAPS)으로 전환됨.
- 한편, 회사설립 절차는 서부유럽의 여타 국가들에 비해 복잡하지 않으며,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일반적인 설립유형인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음.
 - 권한 있는 공증인으로부터 정관을 공증 받은 후 15일 이내 본사가 속해 있는 상업등기소에 법인 등록 신청
 - 회사의 영업활동 관련 모든 허가와 공증서류들은 법인등록 이후 5일 이내 무역등기소에 제출(15일 이내 법인 허가서류가 발급되면 관할법인 등록)
 - 회사의 법인등록이 이뤄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무역등기소에 회사설립을 공표(관보를 통해 신규 기업을 공시하고 세무서에 등록)

(2) 외국인투자 우대조치

- 자유무역지대(Free Trade Zones)에 대한 우대조치(법률 제84호,1992)로는 2002년 7월 1일 이전 투자된 100만 달러 초과 제조업 투자에 대해 2006년 12월 31까지 법인세 면제, 자유무역지대간의 관세 및 기타 세금 면제 등임.

- Sulina, Constanta Sud, Basarabi, Galati, Giurgiu, Braila, Curtiti의 7개 자유 무역지대 설정운영(2004년 기준)
 - 낙후지역은 지난 3개월 동안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역,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통신 및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설정되며, 낙후지역에 대한 우대조치(정부명령 제24호,1998)는 투자에 필요한 원재료나 가공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, 투자대상의 토지가 농업 및 기타의 사용목적에서 전용된 경우 그 전용으로 인한 토지 전용세 면제 등임.

- Alba, Hunedoara, Harghita, Gorj, Bihor, Caras-Severin, Salaj, Maramures, Bistrita-Nas명, Prahova, Bacau, Suceava, Tulcea 등 35개 지역(2004년)
 -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조치(법률 제332호,2001)로는 투자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, 투자액의 20%에 대한 세액 공제, 5년 동안 결손금 이월 및 가속감가상각 가능 등임.

- 외국인투자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, 공공수용, 기타 유사한 조치로부터 보호되며, 불가피하게 위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짐.
 - 공업단지 형성과 운영에 대한 우대조치(정부명령 제65호,2001)에는 투자대상의 토지가 농업 및 기타의 사용 목적에서 전용된 경우 그 전용으로 인해 지방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토지 전용세 면제, 투자액의 20%에 대한 세액 공제, 5년 동안 결손금 이월 가능 등이 있음.

- Sibiu, Jibou, Bralia, Mija 지역 등 37개 이상(2004년 기준)
 - 과학 및 기술단지 형성과 운영에 대한 우대조치(정부명령 제14호,2002)는 교육, 연구 및 기술이전과 관련된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, 단지 내 토지에 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기업, 진행 중인 소송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정자산과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공제, 인프라, 투자 등에 대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개발 프로그램 제공, 개발을 위한 기부금, 사업권 제공 및 펀드 조성 등의 특혜가 부여됨.

(3) 조세제도 개관

<표> 동유럽 4개국의 주요 세율수준 비교
(2008년 기준)

(단위: %)

	폴란드	헝가리	체코	루마니아
소득세				
법인세율	19	16	21	16
개인소득세율	19, 30, 40	18, 36	15	16
부가가치세율	22	20	19	19

자료: EIU, Country Commerce 2007.

- 개인소득세는 2004년말 까지 18%에서 40%까지 누진적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, 2005년 1월 1일부터 16%의 단일세율이 부과됨. 고용주는 매달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를 납부할 법적 책임을 부담함.
- 2001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제작 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 소득은 정부 훈령에 따라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됨.
- 법인세 납부 대상은 루마니아 국내외에서 과세대상 이윤을 획득한 루마니아 법인 및 루마니아 내 지사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얻은 외국법인 등이 있음. 과세대상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등으로 인한 모든 수익이며 수익창출을 위한 제반 비용 및 다음의 비용은 법인세 공제가 가능
 - 수취계정 잔액가치의 30% 이하인 악성채무(Bad Debt). 단 2007년 1월부터 악성채무 전액이 공제 가능
 -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비용
 - 비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비용 중 부채비율이 300%보다 작고 이자율이 중앙은행의 참고금리(자국통화표시 이자비용의 경우)보다 작거나 연 7%보다 작은 경우(외화표시 이자비용인 경우)
 - 보험 및 재보험에 의해 설정된 유보금 등
- 2005년 1월 1일부터 16%의 단일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, 연락사무소의 경우 4,000유로 상당의 정액세를 매년 지불함. 2002년 6월 30일 이전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한 제조업체들에 한하여 보장된 법인세 면제혜택은 2006년 12월 말 종료됨.

- 1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, 연간 매출액이 1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초소형 기업에 대한 법인세(Income Tax for Micro-Enterprises)는 16% 법인세율 대신 매출액의 2%(2008년 2.5%, 2009년 3%)를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짐.
- 배당 과세는 원천징수 대상이며 배당수령자에 따라 배당세율이 다음과 같이 결정됨. 주주가 기업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가치 이상의 금액을 기업이 지불한 경우에도 루마니아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됨. 또한, 루마니아의 EU 가입 후 역내 기업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, 2년 이상 대상 기업 지분 25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대상임.
-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EU 규정을 따르며, 루마니아의 기준 부가가치세율은 19%이고 수출품목이나 국제운송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.
- 2004년 1월 1일부터 특별소비세에 대한 새로운 규정(법률 제571호, 2003)이 적용되고 있으며, 특별소비세는 루마니아에 있는 생산자의 경우 물품 생산시 수입자의 경우 통관시 부과됨.

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
 유럽·기획조사팀장 조 양 현
 (☎3779-6663) yhjo@koreaexim.go.kr